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축산물 확인검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같은 법 제4조, 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관할 행정기관 회수계획, 회수결과 등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허가(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허가(신고)관청은 관내 축산물 영업자로부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여부를 확인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강원도 ○○과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 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검사 의뢰한 축산물가공품 중 검사결과 부적합으

로 통보받은 아래 [표]의 6건에 대해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았으나,

회수가 종료된 시점까지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반 (부적합)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나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등 사후조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축산물 확인검사

회수계획보 고일자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부적합 항목	회수제품명	회수여부	감사확인
2014. 10. 21.	○○○○ 추출식품	식육가공업	화천군	세균수	○○ ○○○ 중탕	회수계획 보고 후 유통제품 등 회수 (5분의 4이상 회수)	확인검사 미 실시 및 행정처분 미검토
2014. 11. 28.	○○○○식품	식육가공업	태백시	대장균군	○○○○○○곰팡		
2014. 12. 1.	○○○식품	식육가공업	춘천시	대장균군	○○ ○○○훈제		
2014. 12. 1.	○○○식품	식육가공업	춘천시	대장균군	○○ ○○○훈제 슬라이스		
2015. 3. 6.	○○목장	유가공업	횡성군	세균수	○○목장 유기농 아이스크림 ○○○○		
2015. 8. 17.	○○○식품	식육가공업	춘천시	대장균군	○○○ 오리훈제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축산물가공업소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아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제품의 경우, 유통 중인 해당 회수 대상 축산물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자가 품질검사 부적합 축산물 확인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